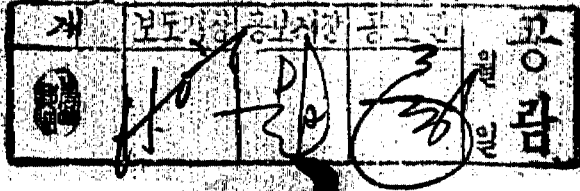


제 1230 호
1985.12.23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문관
편집인 : 공보관 아광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

시보

차 례

◎ 고 시

- 제 867 호 :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지적승인 3
- 제 868 호 :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적승인고시 3
- 제 869 호 :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 4
- 제 870 호 : 도시계획시설 (공공공지) 결정 4
- 제 871 호 : 도시계획사업 (쓰레기 및 오물처리장) 실시계획인가변경
(토지세목고시) 5
- 제 872 호 :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 (면적정정) 고시 9
- 제 873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시행허가 10
- 제 874 호 :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결정 10

< 이 면 계 속 >

제										
번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2025

제 875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11
제 876 호 :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	11
제 877 호 : 울지로 1 가구역 제 2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	12
제 878 호 : 남대문구역제 2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	15
제 879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변경허가	15
제 880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변경허가	16
제 881 호 : 도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	17
제 882 호 :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	17
제 883 호 : 공평제 3 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	19
제 884 호 : 신문로제 2 구역제 6 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	20

◎ 공 고

제 767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매시장) 변경시행공람공고 (기간연기)	23
---	----

◎ 구 청 공 고

성북구제 39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공고	2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◎ 사 령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7 호

도시계획변경에따른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431 호 ('83.12.26) 로 도시계획변경결정 (풍치지구 일부 해제)된 금호, 옥수풍치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23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적변경승인내역

- 1) 구역명 : 금호, 옥수풍치지구

가. 지적승인 고시내역

구역명	위치	면적			비고
		변경전	변경후	증	
동소문구역	성북구돈암동 606, 616 번지일대 및 동소문동 1가 1번지일대	276,160	283,390	7,230	

나. 도면 : 따로 불임 (생략)

- 2) 위치 : 성동구응봉동 134-182 번지 일대
- 3) 내역

변경전(㎡)	변경(해제)면적	변경후면적(㎡)
1,095,000	10,318	1,084,182

나. 지적변경승인도면 : 별첨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8 호

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적승인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 536 호 ('85.12.6)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(추가) 결정된 동소문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23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9 호

도시계획사업(여객자동차정류장)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57 호('78.9.6) 및 동고시 제 480 호(78.9.15)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820-18의 4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여객자동차정류장)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23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성북구정릉동 820-18의 4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(여객자동차정류장)시행

명칭 : 유계차고 신축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: 유계차고신축 A=208㎡

라. 사업시행자주소성명 :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820-18

동양교통㈜ 대표 김기현

마.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

착공 : 1986. 1. 5

준공 : 1986. 6. 30

바. 사용할 토지 : 별첨조서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70 호

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결정

-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1 항 같은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 나목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 12 조제 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23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결정조서

구분	위치	면적(㎡)	비고
공공용지	강남구세곡동 7-3, 19-1, 142-3 일대	51,475	

별첨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871 호

도시계획사업 (쓰레기및오물처리장)
 실시계획인가변경 (토지세목고시)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07 호 ('78.3.18)로 도시계획사업 (쓰레기 및 오물처리장) 실시계획인가되어 같은 고시 제 618 호 ('83.11.19)로 도시계획사업 (쓰레기 및 오물처리장)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-5 호일대 및 성산동 540 번지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 조 및 같은 법 제 26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쓰레기 및 오물처리장) 실시계획인가를 변경 (토지세목고시) 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환경녹지국 청소과 및

마포구 청소과와 건설관리과에서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23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마포구성산동 540 번지 일대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쓰레기 및 오물처리장)
- 다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종합건설본부장)
- 라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: 별항
- 마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항
- 바. 기타사항 : 변경없음

토 지 조 서

번호	지번	지목	지적(㎡)	소유자 주소 성명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	비고
				관계인	주소 성명		
1	상암동 485-22	전	1,471	서대문연회 115-4	이근태		
				강남서초동산 90-1 우성아 11 동 1111 호	이병열		
				서대문구연회 115-4	이왕열		
				상 동	이상열		
				상 동	이우열		
				상 동	이진경		

번호	지 번	지 목	지적(㎡)	소유자 주소 성명		소유권이의 의권리명세	비 고
				관	계인 주소 성명		
2	상암동 485-27	전	1,322	마포구상암동 64	이철만		
3	" 485-28	"	1,154	상 동	"		
4	" 487-7	"	66	상 동	"		
5	" 487-8	"	73	상 동	"		
6	" 487-10	"	2,106	서대문구연희 74-1 영등포여의도동 30 목화 (아) 2 동 509 호 상 동 상 동 상 동	김종진 곽영희 김기형 김보현 김지영		
7	상암동 487-13	"	1,872	도봉상문동 571	정병철		
8	" 487-14	"	922	상 동	"		
9	" 496-20	"	767	성북성북 1-118 종로수송 80	김용성 전방 주식회사	가 등 기	
10	" 496-80	"	458	마포당인 15-17	윤정호		
11	" 496-81	"	4,022	경기과주문산마성 211-11	임성애		
12	" 496-82	"	1,689	종로효자 172-1	강신팔		
13	" 496-92	"	1,722	성북성북동 1-118 종로수송 80	김석성 전방 주식회사	가 등 기	
14	" 496-103	"	1,960	동대문신설 114-13	장홍염		
15	" 496-83	"	3,600	관악봉천 1690-117 종로수송 80	정용규 전방 주식회사	가 등 기	
16	" 496-105	"	2,350	성북성북동 1-118 종로수송 80	김석성 전방 주식회사	가 등 기	
17	" 496-148	"	3,306	마포성산동 23-16 상 동	박성탁 박영혜		
18	" 496-158	"	50	동대문신설 114-13	장홍염		
19	성산동 546	"	1,544	마포성산동 174-2 마포서교 398-2	김중배 박충순	가 등 기	
20	" 548-1	"	1,022	서대문남가좌 124-412	안한식		

번호	지 번	지 목	지적(㎡)	소유자 주소 성명		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	비 고
				관 계 인 주소 성명			
				마포서교 398-2	박충순	가 등 기	
21	성산동 548-2	전	1,625	경기도부천시송내동 230 마포서교 398-2	안경석 박충순	"	
22	" 548-5	"	227	경기도부천시송내동 280 마포서교 398-2	안경석 박충순	"	
23	" 548-6	"	19	경기도부천시송내동 280 마포서교 398-2	안경석 박충순	"	
24	" 547번지	"	2,050	서대문북가좌 100-283 마포서교 398-2 서대문북가좌 100-283 마포서교 398-2 성남시상대원동 855-5 마포서교 398-2 서대문구북가좌동 100-283 마포서교 398-2 서대문구북가좌동 100-283 마포서교 398-2	지경환 박충순 김용제 박충순 지대임 박충순 지대자 박충순 지기환 박충순	" " " " " " " " " "	
25	성산동 532번지	"	1,626	마포성산 261-13 마포서교 398-2	안희석 박충순	"	
26	" 534-2	"	1,486	도봉창동 376-3 마포서교 398-2	강소자 박충순	"	
27	" 534-6	"	1,595	도봉창동 376-3 마포서교 398-2	강소자 박충순	"	
28	" 534-7	"	225	도봉창동 376-3 마포서교 398-2	강소자 박충순	"	
29	" 535	"	1,980	마포성산동 498-3 마포서교 398-2	정인범 박충순	"	

번호	지 번	지목	지적(㎡)	소유자 주소 성명		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	비 고
				관	계인 주소 성명		
30	성산동 536	전	1,197	마포구성산동 498-3 " 서교동 398-2	정인범 박충순	가 등 기	
31	" 544	전	367	" 성산동 572-73 " 서교동 398-2	이은수 박충순	"	
32	" 545-1	전	1,342	" 성산동 32-14 " 서교동 398-2	안이복 박충순	"	
33	" 545-3	전	47	" 성산동 32-14 " 서교동 398-2	안이복 박충순	"	
34	상암동 482-237	전	1,005	" 상암동 187	이영호		
35	" 487-3	전	493	강서구 화곡동 391-38 마포구신수동 57 강남구방배산 11-9	박정자 이춘자 김홍애		
36	" 485-57	전	142	마포구상암동 64	이철만		
37	" 485-33	전	1,762	" 8	김문희		
38	" 487-35	전	347	" 417	교육순		
39	" 487-36	전	3,815	" 417	이철수		
40	" 486-16	전	83	서대문홍계동 330-89	김옥춘		
41	" 487-88	전	2,069	마포구상암동 482	노두용		
42	" 482-14	전	575	성북구질음동 582-11	이종복		
43	" 485-46	전	1,531	강동구둔촌주공아파트 414동 302호	이영태		
44	" 482-81	전	1,240	마포구상암동산 26	최수성		
45	" 482-144	전	936	마포구상암동산 26	이영문		
46	" 482-389	전	595	강남구반포동 279-5 신반포아파트 6동 506호	이종필		
47	" 482-60	전	664	성북구종암동 70-69	박경석		
48	" 482-38	전	926	동대문구신설동 114-13	상홍염		
49	" 485-14	전	1,620	마포구상암동 403-2	김이정		
50	" 480-3	전	1,977	중구을지로 1가 95-1 서대문구연희동 115-4	태을물산 유한회사 이근태		

번호	지 번	지목	지적(㎡)	소유자 주소 성명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	비고
				관	계인 주소 성명		
51	상암동 486-26	전	33	서대문구연희동 250-8	박희주 마포구 신우서	세계남처몰에 의한압류	가압류
52	" 495-34	전	63	마포구신암동 417	엄기준		
53	" 496-49	전	764	서대문구연희동 115-39	최문식		
54	" 496-51	전	512	마포구상암동 417	엄명창		
55	" 496-39	전	397	용산구이태원동 271	이광훈		
56	" 481-138	전	1,736	서대문구연희동 170-116	박광진		
57	" 496-129	전	2,579	마포구상암동 341	박종구		
58	" 496-153	하천	23		국 (건설부)		
59	" 481-120	전	43	종로효자동 172-1	장산팔		
계			71,122				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872 호

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
(면적정정) 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 227 호 ('84.5.18)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2 호 ('85.8.27) 로 지적고시 된, 주택개량재개발 대현제 1 구역에 대하여
2. 도시재개발법 제 4 조 및 제 8 조와

같은법 시행령 제 58 조제 1 항제 1 호 의 의거 구역변경 (단순면적 정정) 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5.12.23

서울특별시장

가. 내역

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비고
		기정	변정(정정)	
대현제 1 구역	서대문구대현동 61 일대	40,800	41,742	증 872㎡
나. 도면: 별첨 (생략)		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73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 변경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50 호('84.8.1)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된 도봉구하계동산 16-6 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학교)을 변경 시행허가 하고 고시한다.

다. 사업규모 및 면적
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23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도봉구하계동 산 16-6 번지 일대
 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학교)
 명칭 : 대진고등학교 신축

구분	당초	변경	비고
대지면적	28,096㎡	변경없음	
건축면적	3,851.07㎡	3,768.83㎡	감 82.24㎡
연면적	14,377.97㎡	14,846.81㎡	증 468.84㎡

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도봉구하계동산 16의 6 학교법인 대진학원 이사장 권석규
 마. 사업기간 : 변경없음.
 (1984.8 ~ 1987.3.31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74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결정

1. 건설부고시 제 227 호('85.5.18)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562 호('85.8.27)로 지적 고시된 주택개량 재

개발 대현제 1 구역에 대하여
 2. 도시 재개발법 제 5 조, 제 6 조의 2, 제 8 조, 같은법 시행령 제 56 조, 제 58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계획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23

서울특별시장

가. 내역						
구역명	위 치		면 적	비 고		
대현제 1 구역	서대문구대현동 61 번지일대		41,742 ㎡			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875 호</p> <p>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</p> <p>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266 번지의 4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 <p>1985.12.24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. 사업주체 : 강남구논현동 88-6 호 미도건설 백남효, 장영화 3. 사업개요 가. 위치 : 성동구광장동 266 번지의 4 필지 나. 대지면적 : 3,464.10 ㎡</p>						
<p>다. 규모 : 연립주택 3층 2 동 84 세대 4. 사업기간 : 1986.1-1987.6</p> 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876 호</p> <p>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</p> <p>1. 서울도심지 재개발사업 을지로 1가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,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1항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,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,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5.12.24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				
가.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조서						
구 분	지구명	대지면적	건축율	용적율	층 수	주 용 도
변 경 전	제 2 지구	1,936.5	45%	509.1%	12/4	업무및판매시설
변 경 후	"	1,936.5	45%	507.4%	12/4	"
나. 기타사항 : 동지구 건축계획의 용적율의 변경없음.						
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877 호</p> <p>울지로 1 가구역제 2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74 호 ('84.8.10)로 사업시행 인가된 울지로 1 가 구역제 2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</p> <p>가. 변경인가내용</p>		<p>시재개발법 제 8 조, 제 1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변경 인가하고, 동법 제 1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>1985.12.24 서울특별시장</p>
구 분	기 정	변 경
1) 사업의명칭	울지로 1 가구역제 2 지구 재개발사업	변 경 없 음
2) 시행구역	중구울지로 1 가 71-1 번지일대 (20 필지)	"
3) 시행면적	2,038.7㎡	"
4) 주된사무소소재지	중구울지로 1 가 32	강남구역삼동 648
5) 시행기간	'84.8.10-'87.7.31	변 경 없 음
6) 시행인가년월일	'84.8.10	"
7) 시행자주소	중구울지로 1 가 32 부림동산(주) 대표 송 관 용	강남구역삼동 648 코오롱건설(주)대표 석 학 진 중구울지로 1 가 32 부림동산(주)대표 송 관 용
8) 건축계획		
대지면적	1,936.5㎡	변 경 없 음
건폐율	45%	"
용적율	509.1%	507.4%
층수	지하 12 층, 지하 4 층	변 경 없 음
용도	업무 및 판매시설	"
9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		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
1. 토 지

번 호	구분 소재지	지번	지 목	지 적 (㎡)		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권리 종목	권리 내용
				원지적	시행면적	지구외	관 계 인 주 소 성 명			
1	울지로1가	38-2	대	69.4	12.6	56.8	중구울지로1가37	집 점 속		
2	"	39-2	"	28.7	28.7		마포구서교동 464-6	유 치 강	가등기	매매계약
	"	40-2	"	32.1	32.1		종로구홍익동 35-22	코오봉건설(주)		
	"	43	"	66.1	66.1		마포구서교동 464-6	유 치 강		
	"	42	"	41.7	41.7		종로구홍익동 35-22	코오봉건설(주)		
	"	42	"	41.7	41.7		마포구서교동 464-6	유 치 강		
	"	42	"	41.7	41.7		종로구홍익동 35-22	코오봉건설(주)	"	"
3	"	41-2	"	75	75		" 병창동 403-2	송 관 용	선 집	근저당
	"	44-2	"	82.3	27.3	35	" " 송관용, 삼익건설(주)			
	"	44-4	"	23.7	23.7		중구남대문로1가130 한일은행영업2부(삼익건설지분)			
4	"	46	"	132.2	14	118.2	종로구평장동 403-2	송 관 용		
4	"	46	"	132.2	14	118.2	성동구신당동 429-7	이 응 용	가등기	매매계약
	"	46	"	132.2	14	118.2	중구울지로1가46	부림주택(주)		
5	"	71-7	"	175.2	73.6	101.6	중구울지로1가46	부림주택(주)		
6	"	45	"	247.9	247.9		" " 32	부림홍산(주)		
7	"	70-2	"	61.7	61.7		" " "	"		
8	"	71-1	"	830.2	812	18.2	" " "	"	가등기	매매계약
	"	71-4	"	105.1	105.1		강남구역감동 648	코오봉건설(주)		
	"	71-5	"	91.6	91.6		중구울지로1가32	부림홍산(주)		
9	"	73-2	"	124.3	124.3		" " "	"		

제 1230호 시

표 1985.12.23 25-13

2031

번호	소재지	구분	지번	지 적 (㎡)			소유자 주소 성명		권리 종목	권리 내용
				원지적	시행면적	지구외	관계인 주소 성명			
10	을지로1가	44-3	대	11.6	11.6		강남구역삼동 648	코오롱건설(주)		
11		72		145.5	145.5		" 대치동 900-60 " 역삼동 648 서울특별시	박 경 회 코오롱건설(주) 중 구 청	가동기 압 류	매매계약 사채채납
12	"	41-4	"	403.3	19.6	383.7	"			
	"	83-2	"	171.9	24.6	147.3	"			
합 계					2,038.7					

2. 건 물

번호	소재지	구분	지번	면 적		구 조	용 도	소유자 주소 성명	
				평	㎡			관계인 주소 성명	
1	중구을지로1가	38-2	74.16	245.16	철근콘크리트평옥개	영업용	중구을지로1가 37-4	김 정 속	
2	"	39-2	42.5	140.5	연와조와좁아연층	주택겸 점 포	마포구서교동 464-6	유 치 강	
		40-2							
		43							
3	"	41-2	16	52.89	목조와좁	영업용	종로구명창동 403-2	송 관 용	
4	"	44-1	79.0	261.15	철근콘크리트도 단층	"	중구을지로1가 32	부림홍산(주) 삼익건설(주)	
		44-2							
5	"	45	110.51	365.31	목조와좁	"	"	부림홍산(주)	
6	"	46	38.0	125.62	"	주택및 사무실	" 46	부림주택(주)	
		47							
		71-7	11.47	37.92	"	"	"	"	
7	"	72	217.90	720.34	철근콘크리트평옥개	사무실	강남구대치동 900-60	박 경 회	
8	"	71-1	11.94	39.47	목조와좁	주택및 사무실	중구을지로1가 32	부림홍산(주)	
9	"	71-4	19.79	65.42	"	점 포	"	"	
10	"	73-2	24	79.34	"	"	중구도동1가 35-20	김 영 회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78 호
 남대문구역제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28 호 (84.11.1) 로 사업시행 인가된 남대문구역 제2 가. 변경내용

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 법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16조 및 동법시행령제 2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1985.12.24
 서울특별시장

구 분	대지면적	건축율	용적율	층 수	주 용 도	비 고
기 점	1,562.4㎡	39.8%	464.9%	13/5	업무 및 판매	
변 경	1,562.4㎡	39.66%	505.02%	13/5	판매시설	

나. 변경사유 : 사업계획변경결정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79 호
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변경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7 호 (84.5.24) 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되고 동 고시 제 637 호 (84.11.5) 로 변경허가된 강남구대치동 937 번지의 1 필지 도시계획 사업 (시장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 규정과 동령 제 6조 1 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

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24
 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- 서울특별시 강남구대치동 937 의 1 필지
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도시계획사업 (시장) 변경시행

다. 사업의 규모 단위 : ㎡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증 감	비 고
대 지 면 적	9,695.4	5,956.9	△ 3,738.5	
진 축 면 적	2,898.84	2,900.82	1.98	
진 축 연 면 적	26,255.39	26,270.76	15.37	

구	분	변경 전	변경 후	증 감	비 고
용	시 장	13,175.61	15,964.22	2,788.61	지하 1 층 ~ 지상층 3 층
	운 동 시 설	3,464.5	3,339.44	△ 125.06	지상 4 층 ~ 지상층 4 층
	업 무 시 설	1,054.3	623.34	△ 430.96	지상층 4 층
도	공 유 면 적 (주차장, 기계실)	8,560.98	6,343.76	△ 2,217.22	지하 1 층 ~ 지하 2 층

라. 사업시행자 - 서울특별시 강남구
대치동 937 번지

(주)그랜드대표이사 김만진

마. 사업예정기간 - 1984.5-1986.4.30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
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- 별
첨 (생략)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
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-
별첨 (생략)

1) 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되고
등고시 제 697 호 (85.10.15) 로 변경결
정된 강남구 논현동 105-7 번지 도시계획
사업 (시장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
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 규정과
동령 제 6 조 1 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
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
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
인다.

1985.12.24

서울특별시 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80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변경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5 호 (85.7.

다. 사업의 규모

단위 : m²

구	분	변경 전	변경 후	증 감	비 고
대	지 면 적	3,757	3,757	-	
건	축 면 적	1,437.6	1,428.08	△ 9.52	
건	축 연 면 적	38,739.4	39,739.16	999.76	

구	분	변경 전	변경 후	증 감	비 고
용	업 무 시 설	14,314.2	25,619.44	11,305.24	지상 1층 - 19층
	관 매 시 설	13,427.11	3,273.55	△10,153.56	지하 1층
도	주차장, 기계실	10,998.09	10,846.17	△ 151.92	지하 2층 - 4층

라. 사업시행자 -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동 106-1 동산토건(주) 대표이사 고 종 진

마. 사업예정기간 - 1985.7.1
-1986.12.30

바. 사유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개기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- 별첨 (생략)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- 별첨 (생략)

가. 변경내용

- 1) 시행기간변경
 - 당초 : 83.10.4 - 85.12.31
 - 변경 : 83.10.4 - 86. 4.30
 - 변경사유 : 공사완료 보고에 필요한 제반절차 미결
- 2) 시행자의 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
 - 당초 : 강남구청당동 134-20
 - 변경 : * 역삼동 646-18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82 호

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

1. 도심재개발사업 마포로제 1구역의 사업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5조, 동법시행령 제 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2. 광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24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조서 (별첨조서작성)

나. 관계도면 : 별첨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81 호

도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9호 (83.10.4)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남대문구역 제 8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조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 하고 동법시행령 제 21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1985.12.24

서울특별시장

마포로제 1구역 재개발사업 계획변경

지구별계획 (단위: ㎡)					
기 정		변 경		비 고	
지 구 명	면 적	지 구 명	면 적		
19 지 구	2,636	19-1 지 구	1,656.8		
		19-2 지 구	1,747.8		
20 지 구	1,712	20 지 구	1,339	감 373	
21 지 구	-	21 지 구	1,888	증 1,888	
22 지 구	11,477	22 지 구	8,908	감 2,569	
23 지 구	3,995	23 지 구	3,615	감 380	
45 지 구	2,039.6	45 지 구	2,705	증 665.4	
시설녹지계획 (단위: ㎡)					
구 분	기 정		변 경		비 고
	위 치	면 적	위 치	면 적	
공덕 1 녹지	-	-	마포구 공덕동 435-3 일대	620	신 설
공덕 2 녹지	-	-	마포구 공덕동 439-5 일대	687	"
공원시설계획 (단위: ㎡)					
구 분	기 정		변 경		비 고
	위 치	면 적	위 치	면 적	
마 포 공 원	마포구마포동377-1일대	1,650	마포구마포동377-1일대	2,030	증 380
도 화 3 공 원	-	-	마포구도화동44-8일대	1,836	신 설
공 덕 2 공 원	마포구공덕동 435-3 일대	2,520	-	-	폐 지
공 덕 3 공 원	마포구공덕동 437-5 일대	1,310.4	-	-	"
공 덕 4 공 원	-	-	마포구공덕동 423-4 일대	2,715	신 설

주차장계획 (단위: m)							
구분	기정			변경			비고
	위치	면적		위치	면적		
도화1 주차장	마포구 도화동 44-8 일대	1,836			-		폐지 (공원으로변경)
도로계획							
구분	유별	번호	폭원	연장	시점	종점	비고
기정	중로2류	183	15m	68m	도화동17-20	도화동17-12	
변경	소로3류	1	6m	"	"	"	폭원축소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83 호

공영제 3지구 재개발사업 관리
처분계획 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 호 (84.1.24) 호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공영제 3 지구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 41 조 규정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 이를 동 법 제 1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12.24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의명칭 : 공영제 3지구재개발사업
나. 시행구역 :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25번지의외 76필지
다. 시행면적 : 5,498.1 m²

라. 시행자 주소 및 성명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천호기업(주) 대표이사 이 성 룡
나. 사업기간 : 80.6.12 - 86.3.31
바.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
대지 및 건축시설
1) 대지 (1필지) : 4,225 m²
2) 건축시설 (1동) : 27,530.45 m²
○층 수 : 지하 4층, 지상 14층
○주용도 : 업무 및 판매시설
사. 분양선계 : 해당사항 없음
아. 분양대상자의 주소, 성명 : 해당사
항 없음.
자.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
또는 건축시설의 주산가액과 종전
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
격 : 해당사항 없음
차.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
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
리명세 (별첨 1)

- 카.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: (별첨 2)
- 타.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: (별첨 3)
- 파. 법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: 해당사항 없음
- 하. 참여조합원이 취득하게 될 대지 및 건축시설의 명세 및 참여조합원의 주소, 성명 : 해당사항 없음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84 호

신문로제 2 구역제 6 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3호(85.3.30)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신문로제 2 구역제 6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기 이를 동법 제 41 조 5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12.24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의명칭 : 신문로 2 구역제 6 지구

재개발사업

나. 시행구역 : 종로구 신문로 2 가 89-29 일대 (총 9 필지)

다. 시행면적 : 3,290.1 ㎡

라. 시행자의 주소, 성명

1) 주소 : 종로구 종로 1 가 1

2) 성명 : 씨티은행 서울지점

대표자 윌리엄더블유허저슨

마. 사업시행기간 : 1985.3.30-1988.3.31.

바.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

1) 대 지 : 2,678.1 ㎡

2) 건축시설 : 19,799.06 ㎡

3) 층 수 : 지상 16 층, 지하 3 층

4) 용 도 : 업무시설

사. 분양설계

1) 시행구역내 토지 9 필지의 시행면적 3,290.1 ㎡중 공공시설면적 612 ㎡를 제외한 2,678.1 ㎡를 1 필지로 지적정리하여 (주)동원빌딩은 6,550,236,300 분지

5,876,121,600 의 지분을, 시행자인 씨티은행은 나머지분을 각 공유지분으로 한다.

2) 새로이 조성되는 건축시설(및 부대시설)19,799.06 ㎡는 시행자의 단독소유로 한다.

3) 분양대상자 이외의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시행자와 동소유자간에 합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,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

<p>우에는 가격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종전토지 및 건축시설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본 계획 제 6항내에서 정한바에 따라 청산한다. 다만 종전토지등의 소유자가 동청산을 거부하거나 지장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 3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한다.</p> <p>4) 사업시행구역내의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 8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대케처리 하여야하나, 관리청 의견조회결과 대체처리가 불가능하다는</p>	<p>것이 회시되었으므로 시유지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입한다.</p> <p>5) 분양대상자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등기된 권리는 그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토지의 공유지분 또는 건축물에 설정되는 것으로 한다.</p> <p>6) 본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본 재개발사업 완료후 시행자는 새로이 조성되는 건축시설에 대한 사업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 청산한다.</p> <p>7) 회계사항은 시행자의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회계처리에 대하여 회사업년도별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다.</p>
--	---

아.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

성명	주소	비고
씨티은행 서울지점 주식회사 동원빌딩	종로구 종로1가 1번지 종로구 당주동 128-27	시영차

자.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경세와 가격

1)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

구분	분양대상자	명세	추산액 (원)
대지	씨티은행	1필지 2,678.1㎡ 중 6,550,236,300분지 674,114,700의지분(275.62㎡)	674,114,700
	(주)동원빌딩	1필지 2,678.1㎡ 중 6,550,236,300분지 5,878,121,600의 지분(2,402.48㎡)	5,875,121,600
건축시설	씨티은행(주)	1동 19,766.06㎡	24,457,592,560
	동원빌딩	없음	
대지	계	1필지 2,678.1㎡	6,550,236,300
건축시설	계	1동 19,766.06㎡	24,457,592,560

2)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					
구 분	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가액 (원)				계
	토 지	건물	토 지	건물	
씨티은행서울 지점(시행자.)	36.4㎡	-	93,584,400	-	93,584,400
주식회사 동원빌딩	2,927.0㎡	-	5,876,121,600		5,876,121,600
합 계	2,963.4㎡	-	5,969,706,000		5,969,706,000

㉞ : 평가액은 가격평가위원회의 결정금액임.

차. 분양대상자의 종전토지는 건축물
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: (별첨 1 참조)
카: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
○ 토지

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
이에 대한 청산방법.
1)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
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

지 번	지 목	면적(㎡)	평 가 액 (원)		소 유 자
			㎡당	총 액	
신문로 2가 70번지	대 지	174.2	2,571,000	447,868,200	이 용 문
동 89-28	도 로	32.0	1,513,000	48,416,000	서울특별시

○ 건 축 물

지 번	용도	구조	층별	면적(㎡)	평 가 액 (원)		소 유 자
					㎡당	총 액	
중로구신문로 2가 70번지	공장	연와조 와 습	3	123.96	66,000	8,181,360	이 용 문

2) 청산방법
가)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
시재개발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청
산하여야 할자는 동법 제 5 조에 의거 종
전의 토지 및 건축물은 가격평가위원회에서
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본 판리커
분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0 일 내
에 시행자가 지급하여 가청산하고 사
업완료후 법 제 53 조에 의거 청산
한다.
단, 수용의 경우는 제외한다.

나) 위 경우 청산금의 수령인이 수명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 54 조 제 4 항에 의하여 공탁함으로써 청산에 갈음한다.

다) 국·공유지 재산인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입한다. 과,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

1)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

시 설 명	소재지 및 지번	지목	지 적 (㎡)	평 가 액 (원)
도 로	신문로 2가 70	대	56.3	170,457,300
녹 지	" 89-29	"	20.1	41,948,700
도 로	" 89-21	"	405.1	612,916,300
녹 지	" 108-9	"	74.4	67,916,200
녹 지	" 108-19	"	19.8	17,978,400
도 로	" 106-6	"	22.2	23,509,800
녹 지	" 106-6	"	4.1	4,341,900
계	7필지		612	938,707,600

2)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

지 적	지 목	지 적 (㎡)	평 가 액 (원)
신문로 2가 89-28	도 로	32	48,416,000

3) 도면: 생략

다.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: 해당없음

하.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의 비용의 부담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계획 및 그 비용부담의 한도 방법과 시기: 모든 비용은 시행자 단독으로 부담함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767 호

도시계획사업(도매시장)변경
시행공람공고(기간연기)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9호(83.4.27)로 사업시행허가되고 동 고시

제 599 호 (84.10.13) 동 고시 제 460 호 (85.7.12) 로 변경허가된 강남구 서초동 산 58 번지 (서초동 590 구획) 일대 도시계획사업 (도매시장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24.
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시행지 - 강남구 서초동 산 58 번지 (서초동 590 구획)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도시계획사업 (도매시장) 변경시행

다. 사업시행자 - 강남구 반포동 1176 번지 반포 63 동 503 호 정철신 강남구 서초동 산 56-9 취한일유통 대표 김효순

라. 사업의 규모

○ 시설면적 - 32,680 m²

○ 계획면적 - 32,680 m²

○ 시행면적 - 14,243.35 m²

○ 건축면적 - 6,194.24 m²

○ 건축연면적 - 71,336.95 m²

○ 도매시장 - 42,939.53 m²

(지하 1 층 - 지상 8 층)

○ 사무실 - 14,088.80 m²

(도매시장의 별도용도)

○ 전시설 - 1,827.92 m²

○ 기타 - 12,480.31 m²

(주차장, 기계실)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
1) 착수일 - 1983. 8.

2) 준공예정일 - 1985.12.31.

3) 변경준공예정일 - 1986.12.31.

바. 공람기간 - 공고일로부터 14 일간

사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(생략)

아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(생략)

자.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. (설계도서 생략)

구 청 공 고

◎성북구광고제 39 호

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
행정처분 공고

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 28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

1985.12.23.

성 북 구 청 장

제 1230 호

시

보 1985.12.23. 25-25

지정번호	업소명	소재지	대표자	위반내용	행정처분내용
성북제 87호	신일난방	장위 110-71	강명수	무단장소이전	취소
성북제 101호	충남설비	하월곡동 27-90	정우창	"	"

사 령

1985.12.24 일자

령계 467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이순모	대통령비서실 과전근무를 명함. (85.12.24 부터 별도 통보시까지)	종로구	지방행정서기보

서울특별시장